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9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19.
3. 회 부 일 : 2026.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Ⅲ. 검토의견

1.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임용되기 전에 국·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사립 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현행	개정안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u>복무기간</u> 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 ----- <u>기간</u> 은-----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u>기간</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	⑤ -----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3. (생략)

⑥ (생략)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

1. -----복무기간 및 임용기간

2.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 등의 산입방법) -----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

-----.

제48조의3(복무기간 등의 부담금) -----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이-----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 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 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 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 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 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 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 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 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재해 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 -----. ----- ----- ----- ----- ----- ----- ----- ----- -----.
--	--

나. 검토의견

-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나 업무의 난이도가 정규 교원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무기간이 사학연금 급여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군복무기간 산입 제도와의 정책적 차이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31조 제2항¹⁾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임용되기 전에 ‘현역병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입법례와 동일한 근거(제31조제2항)와 재직기간 산입 방법(제31조의2) 및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 제도(제48조의3)를 따르고 있음.

그러나, 군복무기간 산입 제도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개인의 경력단절과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국가적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직업 활동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에 대하여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② 공무원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1. 3. 23.>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²⁾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임용 전 기간제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³⁾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국·공립학교 교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③ 공적연금 연계제도와의 관계

□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은 연금가입의 공백기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⁴⁾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⁵⁾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료위환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료위환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료위환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3)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 전 기간제교원 기간을 연금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제안된 바 없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최종검색일 2026.3.15.)

4)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사학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은 연계·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적연금 간 이동으로 인한 연금 수급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을 현행 연금법 체계와 다르게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직접 산입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한 검토

- 「사학연금법」은 국·공립교원과의 처우 형평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로서, 급여의 지급과 방식 등 제도의 대부분을 공무원 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는데,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상에서 「사학연금법」상 재직 기간에만 기간제 교원 경력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병역복무기간 산입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 대해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로써, 자발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성격·취지가 다르다고 판단되며, 그 기간을 포함할 경우 국가부담금이 상당 소요될 것임. 아울러,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4.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 1. 2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중검토**

- 병역복무기간은 기간제 교원의 경력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 병역 복무기간 산입 부담금의 경우 국가부담금에 대한 재원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사학연금 가입 전 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도’를 활용하여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산입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가입 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이 폐지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존속됨에 따라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직역연금 가입 시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의 신설 등 관련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기간제 교원 경력에 대한 사학연금 재직기간 산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92